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14 선고 2020가단53166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육삼신, 유태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6. 23.

판 결 선 고 2021. 7. 14.

## 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9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은 17,605,1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7,605,1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04402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(17,587,270원과 그 중 926,548원에 대하여 2016. 9. 9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)을 가지고 있고, 2020. 12. 9. 현재 채권액은 17,605,172원이다.

나.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.)에 관하여 딸인 피고에게 2018. 9. 19.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.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,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같은 날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항변의 요지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2015. 9. 2. E단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.

또한,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한 법률행위이어야 하는데, 원고는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, 수익자나 전득자가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먼저,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C과 피고 사이의 2018. 9. 19.자 증여계약이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

없이 이유 없다.

다음으로,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2018. 9. 19.자 증여계약인바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# 3. 본안에 관한 판단

#### 가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#### 나. 가액배상 여부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 2018. 9. 19. 주식회사 D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피고와 위 D 사이의 신탁계약은 정당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D은 선의의 전득자라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, 피고가 현물반환으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.

다음으로 그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2010. 4. 26.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4,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적어도 원고의 채권액인 17,605,172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,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채권액인 17,605,172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7,605,1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
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**4. 결론**

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태우

## 목 록

1. 강원 홍원군 [ ] 대 433㎡

2. 강원 홍원군 [ ]

[도로명주소 : 강원 홍원군 [ ]]

시멘트블록조 스테이트지붕 2층 주택

1층 36.84㎡(단독주택)

2층 36.84㎡(단독주택)

부속건물

시멘트블록조 스테이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99.37㎡

시멘트블록조 스테이트지붕 단층주택 49.50㎡, 같.

